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하신 뒤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8.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6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2 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일부 환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가입 후 5 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 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시 추징세액 증가)하니 투자결정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집합투자기구 투자시에는 사전에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또는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셋플러스 코리아 리치투게더 장기소득공제 증권 자투자신탁 1 호(주식) [펀드코드 : AP922]

투자 위험 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70%이상을 주로 국내에 상장·등록되어 있는 주식에 장기투자 합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며,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에셋플러스 코리아 리치투게더 장기소득공제 증권 자투자신탁 1 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주로 편입하는 에셋플러스 코리아 리치투게더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장기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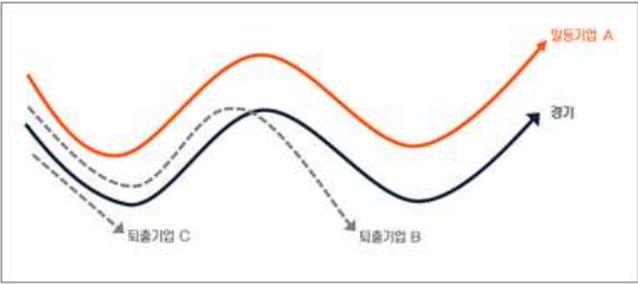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 2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서민과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주로 국내에 상장·등록되어 있는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투자신탁입니다. 에셋플러스는 상식에 근거한, 기업의 이익과 함께 하는 “주주 참여방식의 투자”를 지향합니다. 기업을 단순한 시세 차익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장기간 동업한다는 생각으로 분석하고 투자합니다. 따라서 에셋플러스가 정의한 국내 일등기업 중심으로 장기투자하여 장기 안정적인 투자성과를 기대하는 전략을 추구합니다.

1) 일등기업 투자전략

주식투자의 기본은 좋은 주식에 분산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좋은 주식이란 각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일등기업을 말하며, 일등기업은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많은 소비자가 지갑을 여는 기업은 매출이 증가하기 마련이고 기업의 매출증가는 이익으로 이어지며, 기업의 이익증가는 결국 그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며 주가는 그 가치를 반영하게 됩니다.

모든 산업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게 됩니다. 호황기에는 다수의 기업들이 수익을 내게 되지만, 불황기에 접어들면 안 좋은 기업(기업 C → 기업 B)부터 시장에서 퇴출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일등기업도 그 상황에서 이익을 증가시키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불황이 끝나고 다시 호황기에 접어들었을 때 생존 기업(기업 A)은 퇴출 당한 기업의 몫까지 차지하여 그 이익을 과거보다 많이 향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일등기업의 시장 지배는 더욱 강화되고, 강화된 시장 지배력은 더욱 많은 이익으로 이어지며, 주주에게 커다란 수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 에셋플러스 조사분석시스템

기업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고르기 위해 아래 그림의 5 단계를 거쳐 투자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석기업의 제품이 장기적으로 계속 존재해야 투자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쟁업체들과의 관계에서 분석기업의 몫이 증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분석기업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걸러내고, 이익 창출의 원동력을 파악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 가능), 추가형(추가납입 가능)
 모자형(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집합투자기구)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래스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소득공제(C)	-	1.1000	0.5600	1.5900	113	230	352	610	1,34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소득공제(Ce)	-	0.7100	0.1700	1.1800	73	149	228	397	88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소득공제(S-T)	-	0.7000	0.1600	-	72	147	225	392	875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주 2)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 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0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최근 1년 (*20.03.17~*21.03.16)	최근 2년 (*19.03.17~*21.03.1.)	최근 3년 (*18.03.17~*21.03.16)	최근 5년 (*16.03.17~*21.03.16)	설정일 이후 (*14.03.17~*21.03.16)
집합투자기구	101.49	25.76	11.58	10.52	9.86
참고지수	74.10	17.89	6.93	8.86	6.68
수익률 변동성(%)	22.39	23.79	21.25	18.18	18.18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수익률)
 주 1) '참고지수 = KOSPI×95% + CALL×5%'이며,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써,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폭이 커서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4) 연평균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이며, 참고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5)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지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지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고태훈	1987	책임	11 개	2,648 억원	101.08	25.66	100.06	25.29	3년 10개월
강자인	1989	부책임	18 개	410 억원	101.08	25.66			3년 2개월

주 1) "책임운용인력"은 해당 집합투자지구의 운용이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지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지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지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지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지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지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지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지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격변동위험	이 집합투자지구는 주식형 모집합투자지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변동에 따라 주식 또는 채권 등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신탁채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1) 15 시 30 분 이전: 제 2 영업일 기준가 적용 2) 15 시 30 분 이후: 제 3 영업일 기준가 적용	한매방법	1) 15 시 30 분 이전: 제 2 영업일 기준가 적용, 제 4 영업일 지급 2) 15 시 30 분 이후: 제 3 영업일 기준가 적용, 제 4 영업일 지급
한매 수수료	-		

기준가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 · 판매회사 ·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과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
과세 관련 사항은 제 2 부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6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 (대표번호 : 02-1544-7878 / 인터넷 홈페이지 : www.assetplus.co.kr)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 조좌(집합투자규모상 설계가능좌수)

효력발생일

2021년 04월 27일

종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및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취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n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n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공제(C)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	
	소득공제(Ce)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온라인)	
	소득공제(S-T)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온라인 판매시스템)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assetplus.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assetplus.co.kr)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 10 조좌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자증권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AP922)		
종류 (Class)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소득공제(C)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소득공제(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소득공제(S-T)
금융투자협회 코드	AP923	AP924	AP92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1) 종류형: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2)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대상'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 조좌

주 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모집장소	각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장기소득공제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AP922)		
종류 (Class)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소득공제(C)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소득공제(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소득공제(S-T)
금융투자협회 코드	AP923	AP924	AP92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5.02.16.	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
2015.04.30.	결산 반영
2015.05.19.	부책임용전문인력 삭제
2015.07.01.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인하
2015.09.07.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2015.12.28.	재형 및 소장펀드, 농특세 비과세 전환(2016.01.01. 시행)
2016.02.19.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6.06.17.	펀드이익 유보 조항 변경
2016.07.02.	투자위험 등급 분류체계 개편 반영
2016.07.30.	판매(환매) 기준시점 변경
2017.01.1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7.03.24.	결산 반영
2018.01.12.	부책임용전문인력 추가
2018.04.25.	결산 반영
2018.10.04.	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
2019.04.23.	정기 결산으로 인한 갱신
2019.09.2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으로 인한 변경
2020.04.28.	정기 결산으로 인한 갱신
2020.12.10.	책임/부책임 운용전문인력 변경
2021.04.27.	정기 결산으로 인한 갱신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 번길 14 리치투게더센터 (연락처: 1544-7878, www.assetplus.co.kr)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의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 연수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고태훈	1987	본부장	3년 10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대학교 경영학 - Boston University Economics (석사) - 2014.11 ~ 2018.09 에셋플러스자산운용 BMR 센터 팀장 - 2018.10 ~ 2020.12 에셋플러스자산운용 RT 국내운용팀장 - 2020.02 ~ 2020.12 에셋플러스자산운용 RT BMR 팀장 - 2020.12 ~ 현재 에셋플러스자산운용 RT 국내운용본부장
-----	------	-----	---------	---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2021.03.16. 기준)

성명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고태훈	11개	2,648억원	101.08	25.66	100.06	25.29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상기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적을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5)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나. 부책임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 연수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강자인	1989	팀장	3년 2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Business) - 2014.01~2014.11 Deloitte Consulting Human Capital Group(HCG) - 2014.12~2017.12 RT BMR 센터 - 2018.01~2020.12 에셋플러스자산운용 RT 국내운용팀 - 2020.12~현재 에셋플러스자산운용 RT 헤지펀드운용팀장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2021.03.16. 기준)

성명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강자인	18개	410억원	101.08	25.66	100.06	25.29

주 1) 상기인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상기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적을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5) 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강자인(13개/366억원)

다.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역		부책임용운용역	
성명	운용기간	성명	운용기간
이관우	2017.01.11. ~ 2020.12.09.	김대호	2018.01.12. ~ 2018.10.04.
고태훈	2020.12.10. ~ 현재	고태훈	2018.10.04. ~ 2020.12.09.
		강자인	2018.01.12. ~ 현재

주)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n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n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판매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공제(C)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
	소득공제(Ce)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온라인)
	소득공제(S-T)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온라인 판매시스템)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에셋플러스 코리아 리치투게더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모투자신탁 투자비율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주요투자대상 및 투자목적	주식: 70% 이상, 채권: 40% 이하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국내 일등기업과 저평가된 기업, 지속적인 이익성장이 예상되는 기업 주식에 분산 투자하여 장기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투자전략> - 소비자화 견고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산업구조 조정 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일등기업에 장기투자 - 주주 몫(기업 이익)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기대수익/위험에 따라 투자 <위험관리> -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자산, 파생 상품 등을 통한 실질 주식편입비율을 탄력적 조절 - 포트폴리오 구성 조정을 통한 방어전략

주) 모투자신탁에 관한 투자대상, 투자전략, 투자위험 및 기타 중요 유의사항 등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신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주로 편입하는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장기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모투자신탁	90% 이상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증권모투자신탁 1 호[주식]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비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예의 예치	10% 이하	- 단기대출: 30 일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예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	--

주)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호 및 제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모두투자신탁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계약 제 18조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70% 이상 (다만, 국내주식 70% 이상)	법 제 4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조제 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조제 15항제 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
(2)	채권	40% 이하	법 제 4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거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5)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율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6)	장내파생상품		법 제 5조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 이하가 되도록 한다.
(7)	장외파생상품		법 제 5조제 1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8)	집합투자증권	5% 이하	법 제 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 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9)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10)	투자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11)	증권의 차입	2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투자비율 적용예외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채산을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예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p>※ 상기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을 위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개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개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 1.~4.의 투자비용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p> <p>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제한]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1)	이해관계인 투자	<p>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2)	동일종목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 각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같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 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본다.</p>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까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국채증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합니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상장지수간접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 	<p>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p>

		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3)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5)	계열회사 발행 증권투자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6)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주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모두자신탁 집합투자계약 제 18 조제 5 호 내지 제 10 호,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6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가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 2) 모두자신탁 집합투자계약 제 19 조제 2 호 본문, 제 4 호 및 제 6 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모두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모두자신탁에의 실질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모두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모투자신탁 명칭: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증권모투자신탁[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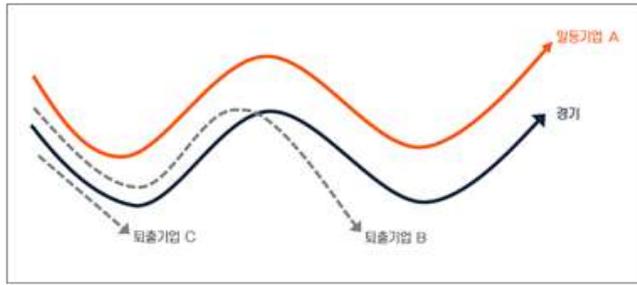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주로 국내에 상장·등록되어 있는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투자신탁입니다. 에셋플러스는 상식에 근거한, 기업의 이익과 함께 하는 “주주 참여방식의 투자”를 지향합니다. 기업을 단순한 시세 차익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장기간 동업한다는 생각으로 분석하고 투자합니다. 따라서 에셋플러스가 정의한 국내 일등기업 중심으로 장기투자하여 장기 안정적인 투자성과를 기대하는 전략을 추구합니다.

(1) 주식 운용전략

1) 일등기업 투자전략

주식투자의 기본은 좋은 주식에 분산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좋은 주식이란 각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일등기업을 말하며, 일등기업은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많은 소비자가 지갑을 여는 기업은 매출이 증가하기 마련이고 기업의 매출증가는 이익으로 이어지며, 기업의 이익증가는 결국 그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며 주가는 그 가치를 반영하게 됩니다.

모든 산업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게 됩니다. 호황기에는 다수의 기업들이 수익을 내게 되지만, 불황기에 접어들면 안 좋은 기업(기업 C → 기업 B)부터 시장에서 퇴출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일등기업도 그 상황에서 이익을 증가시키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불황이 끝나고 다시 호황기에 접어들었을 때 생존 기업(기업 A)은 퇴출 당한 기업의 몫까지 차지하여 그 이익을 과거보다 많이 향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일등기업의 시장 지배는 더욱 강화되고, 강화된 시장 지배력은 더욱 많은 이익으로 이어지며, 주주에게 커다란 수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 에셋플러스 조사분석시스템

기업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고르기 위해 아래 그림의 5 단계를 거쳐 투자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석기업의 제품이 장기적으로 계속 존재해야 투자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쟁업체들과의 관계에서 분석기업의 몫이 증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분석기업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걸러내고, 이익 창출의 원동력을 파악합니다.



(2) 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의 운용전략

- 1)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를 국채, 통안증권, 우량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2) 주로 주식에 투자하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채권, 파생상품, 수익증권, 기업어음,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투자·운용합니다.

(3) 비교지수

■ 비교지수: [KOSPI * 95%] + [CALL * 5%]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흐름을 95% 반영하고 채권을 포함한 기타 유동성 자산의 흐름을 5% 반영한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는 1980년 1월 4일 당시 한국의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 전체의 시가총액의 합을 100으로 하여 현재시점의 시가총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냅니다. 지수는 주가의 변화만을 반영해야 하므로 유무상 증가 등 주식수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변동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매일 한국증권전산(KOSCOM)에서 제공됩니다.
- CALL은 콜금리를 의미하며,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간의 1일물 금리를 의미하며, 한국증권전산(KOSCOM)에서 제공하는 호가 콜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 주식을 주로 편입하는 **에셋플러스 코리아 리치투게더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장기수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대상의 투자수익률과 모투자신탁 투자비율에 따라 연동되는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 비교지수: [KOSPI * 95%] + [CALL * 5%]

-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율을 반영한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는 1980년 1월 4일 당시 한국의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 전체의 시가총액의 합을 100으로 하여 현재시점의 시가총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냅니다. 지수는 주가의 변화만을 반영해야 하므로 유무상 증가 등 주식수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변동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매일 한국증권전산(KOSCOM)에서 제공됩니다.
- CALL은 콜금리를 의미하며,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간의 1일물 금리를 의미하며, 한국증권전산(KOSCOM)에서 제공하는 호가

콜금리를 적용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등에서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라.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격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형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변동에 따라 주식 또는 채권 등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또는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이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 또는 환매제한위험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거나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으며,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집합투자 규약에서 정한 기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의 재산가치가 변동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지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3 조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 원본액 유지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은 **21.25%**였으며, 이는 아래 수익률 변동성 기준에 의하면 투자위험 6등급 중 **2등급(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분류(수익률 변동성 기준)>

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수익률 변동성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주 1) 수익률 변동성(연환산 표준편차)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의미합니다

주 2) 추후 매 결산기마다 변동성을 재측정 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 3)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 가입자격 등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1)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납입일로부터 **제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2)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납입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D 일	D+1 일	D+2 일
자금납입일(15시 30분 이전)	기준가 적용일	
자금납입일(15시 30분 경과 후)		기준가 적용일

3)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환매신청도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1)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2)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D 일	D+1 일	D+2 일	D+3 일
환매청구일(15 시 30 분 이전)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청구일(15 시 30 분 경과 후)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5 시 30 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 시 30 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1 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제 2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 사유: 법 시행령 제 256 조 해당 시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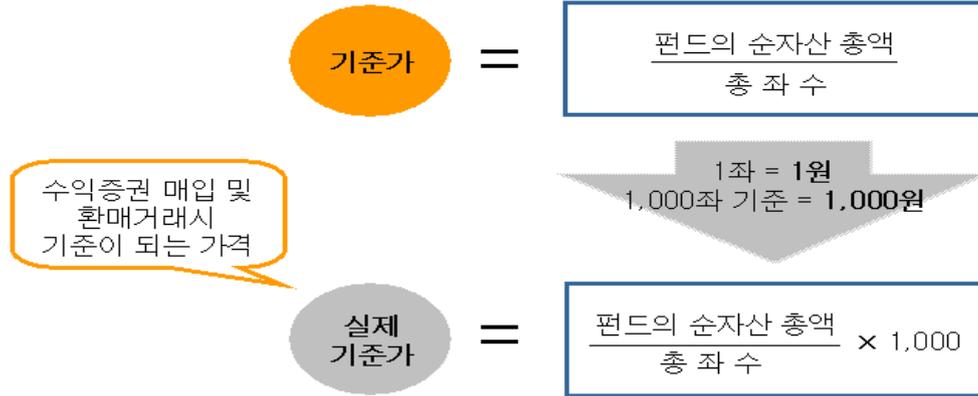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시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계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자투자신탁]

대상자산	평가방법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1)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2)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4) 장외파생상품	당해 파생상품의 발행회사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그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5)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월간 계속 매일 10 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6)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5)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7)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8)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 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9)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시에는 모투자신탁의 평가 당일 순자산 가액(1 좌당 기준가격)으로 평가

주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장	집합투자재산 평가담당 임원
위원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집합투자재산 평가담당 부서장 리스크관리 담당 부서장 기타 위원장이 지정한 자

주 2)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6.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른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적용등 평가관련 사항
7.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8. 평가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9. 법 제 192 조 제 4 항에 따른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자산의 평가에 관련 법규 및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용 (연간, %)								총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회사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소득공제(C)	0.5000	0.5600	0.0300	0.0100	1.1000	0.0022	1.1022	1.5900	1.1022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소득공제(Ce)	0.5000	0.1700	0.0300	0.0100	0.7100	0.0021	0.7121	1.1800	0.7121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소득공제(S-T)	0.5000	0.1600	0.0300	0.0100	0.7000	0.0021	0.7021	-	0.7021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기타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2. 투자증권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주 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두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두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 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6) 이 투자신탁의 모두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은 이 자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7) 수수료선취-오프라인(A)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n 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수수료선취-온라인(Ae)과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n 년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8)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의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종류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소득공제(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3	230	352	610	1,34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13	230	352	610	1,34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소득공제(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3	149	228	397	88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73	149	228	397	88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소득공제(S-T)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2	147	225	392	87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72	147	225	392	875

주) 투자자가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설정 이후 매년 결산, 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 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 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 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 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 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평가 손실로 인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투자대상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므로 수익자 입장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근 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 조의 16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2
가입자격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매년 6.30. 이전에 가입 시에는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가입 가능함
가입기간	2015.12.31..까지(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
저축계약기간	10년 이상 * 단 5년 이내 해지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한도로 추징
가입한도	연 600만원 이내(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합계액을 말함)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되나, 2016년 1월 1일부로 비과세로 전환). 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감면세액추징	가입 후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 또는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시 추징세액 증가).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3.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4. 해지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p>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 16 및 동법 시행령 제 93조의 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의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감사의견
제 7 기(2020.03.17. - 2021.03.16.)	회계감사면제
제 6 기(2019.03.17. - 2020.03.16.)	회계감사면제
제 5 기(2018.03.17. - 2019.03.16.)	회계감사면제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목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2021.03.16.)	(2020.03.16.)	(2019.03.16.)
운용자산	11,507,008,886	8,185,584,418	9,954,066,884
증권	11,360,155,827	8,058,839,871	9,805,182,366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46,853,059	126,744,547	148,884,518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4,747,093	45,662,092	21,567,482
자산총계	11,531,755,979	8,231,246,510	9,975,634,366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4,771,353	45,502,554	21,494,162
부채총계	24,771,353	45,502,554	21,494,162
원본	7,407,138,533	10,525,796,115	9,923,377,769
수익조정금	-866,084,743	-81,002,526	26,134,658
이익잉여금	4,965,930,836	-2,259,049,633	4,627,777
자본총계	11,506,984,626	8,185,743,956	9,954,140,204

손익계산서			
항목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2020.03.17. - 2021.03.16.)	(2019.03.17. - 2020.03.16.)	(2018.03.17. - 2019.03.16.)
운용 수익	7,427,444,326	-2,186,722,023	-1,216,512,208
이자수익	374,041	1,338,733	1,807,591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7,427,070,285	-2,188,060,756	-1,218,319,799
기타 수익	0	0	0
운용 비용	97,954,431	89,670,519	87,388,928
관련회사 보수	97,954,431	89,670,519	87,388,928
매매수수료	0	0	0
기타 비용	1,290,933	1,228,545	1,172,114
당기순이익	7,328,198,962	-2,277,621,087	-1,305,073,250
매매회전율(%)	157.04	157.02	108.44

주)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1 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입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과 목	제7기(2021.03.16)		제6기(2020.03.16)		제5기(2019.03.16)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46,853,059		126,744,547		148,884,518
1. 현금및현금성자산	146,853,059		126,744,547		148,884,518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홀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1,360,155,827		8,058,839,871		9,805,182,366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11,360,155,827		8,058,839,871		9,805,182,366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24,747,093		45,662,092		21,567,482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14,780		50,843		92,060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24,732,313		45,611,249		21,475,422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11,531,755,979		8,231,246,510		9,975,634,366
부 채						
운 용 부 채						
1. 읍선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24,771,353		45,502,554		21,494,162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22,765,145			
4. 수수료미지급금	24,771,353		22,737,409		21,494,162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24,771,353		45,502,554		21,494,162
자 본						
1. 원 본	7,407,138,533		10,525,796,115		9,923,377,769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4,099,846,093		-2,340,052,159		30,762,435	
(발행좌수 당기: 7,407,138,533 좌		4,965,930,836		-2,259,049,633		4,627,777
전기: 10,525,796,115 좌		이익잉여금				
전전기: 9,923,377,769 좌)		수익조정금		-81,002,526		26,134,658
(기준가격 당기: 1,578.61 원						
전기: 785.43 원						
전전기: 1,000.01 원)						
자 본 총 계		11,506,984,626		8,185,743,956		9,954,140,204
부채와 자본총계		11,531,755,979		8,231,246,510		9,975,634,366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7기(2020.03.17~2021.03.16)		제6기(2019.03.17~2020.03.16)		제5기(2018.03.17~2019.03.16)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374,041		1,338,733		1,807,591
1. 이 자 수 익	374,041		1,338,733		1,807,591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7,463,199,418		10,376,146		190,310,784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6,379,516,574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1,083,682,844		10,376,146		190,310,784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36,129,133		2,198,436,902		1,408,630,583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2,109,787,239		1,395,828,038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36,129,133		88,649,663		12,802,545	
운 용 비 용		99,245,364		90,899,064		88,561,042
1. 운용수수료	53,238,205		48,764,634		47,528,304	
2. 판매수수료	41,522,283		37,980,363		37,009,281	
3. 수탁수수료	3,193,943		2,925,522		2,851,343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290,933		1,228,545		1,172,114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7,328,198,962		-2,277,621,087		-1,305,073,250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989342771		-0.216384686		-0.131515022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억좌, 억원)

운용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03.17 - 2021.03.16	104.51	82.08	11.46	13.01	43.10	54.05	72.87	115.32
2019.03.17 - 2020.03.16	98.42	98.42	19.34	18.32	13.25	12.79	104.51	82.08
2018.03.17 - 2019.03.16	81.77	94.38	21.69	23.03	5.04	5.49	98.42	99.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소득공제(C)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03.17 - 2021.03.16	60.33	46.83	6.80	7.56	24.90	30.81	42.23	65.38
2019.03.17 - 2020.03.16	56.69	56.69	10.07	9.45	6.43	6.19	60.33	46.83
2018.03.17 - 2019.03.16	47.32	54.53	11.08	11.55	1.72	1.82	56.69	56.7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소득공제(Ce)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03.17 - 2021.03.16	20.60	16.06	2.48	2.81	7.17	9.18	15.91	24.82

2019.03.17 - 2020.03.16	19.40	19.40	4.13	3.88	2.93	2.83	20.60	16.06
2018.03.17 - 2019.03.16	16.18	18.67	4.10	4.32	0.88	0.96	19.40	19.52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소득공제(S-T)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03.17 - 2021.03.16	24.33	18.97	2.34	2.64	10.73	13.09	15.94	24.87
2019.03.17 - 2020.03.16	23.15	23.15	3.90	3.66	2.71	2.56	24.33	18.97
2018.03.17 - 2019.03.16	19.61	22.62	4.30	4.49	0.76	0.80	23.15	23.29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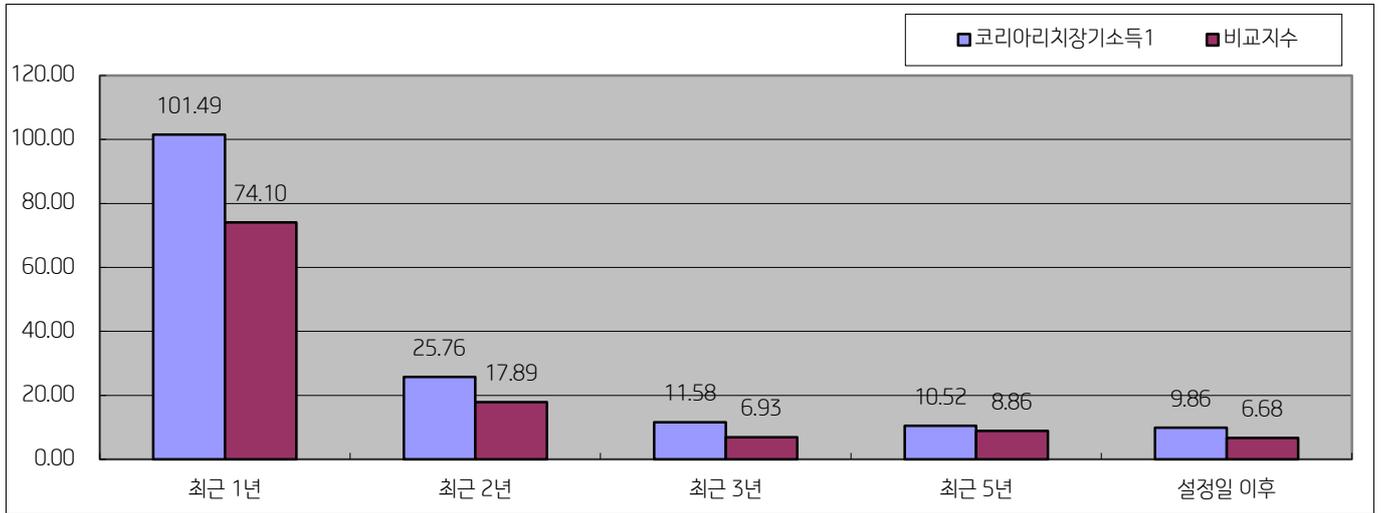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03.17 ~ 21.03.16	19.03.17 ~ 21.03.16	18.03.17 ~ 21.03.16	16.03.17 ~ 21.03.16	14.03.17 ~ 21.03.16
운용	101.49	25.76	11.58	10.52	9.86
비교지수	74.10	17.89	6.93	8.86	6.68
수익률변동성(%)	22.39	23.79	21.25	18.18	18.18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소득공제(C)	99.44	24.39	10.37	9.32	8.66
비교지수	74.10	17.89	6.93	8.86	6.68
수익률변동성(%)	22.39	23.79	21.25	18.18	18.18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소득공제(Ce)	100.16	24.87	10.80	9.74	8.84
비교지수	74.10	17.89	6.93	8.86	6.29
수익률변동성(%)	22.39	23.79	21.25	18.18	18.18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소득공제(S-T)	100.18	24.89	10.81	9.75	8.78
비교지수	74.10	17.89	6.93	8.86	6.21
수익률변동성(%)	22.39	23.79	21.25	18.18	18.18



주 1) '참고지수 = KOSPI * 95% + CALL * 5%'이며,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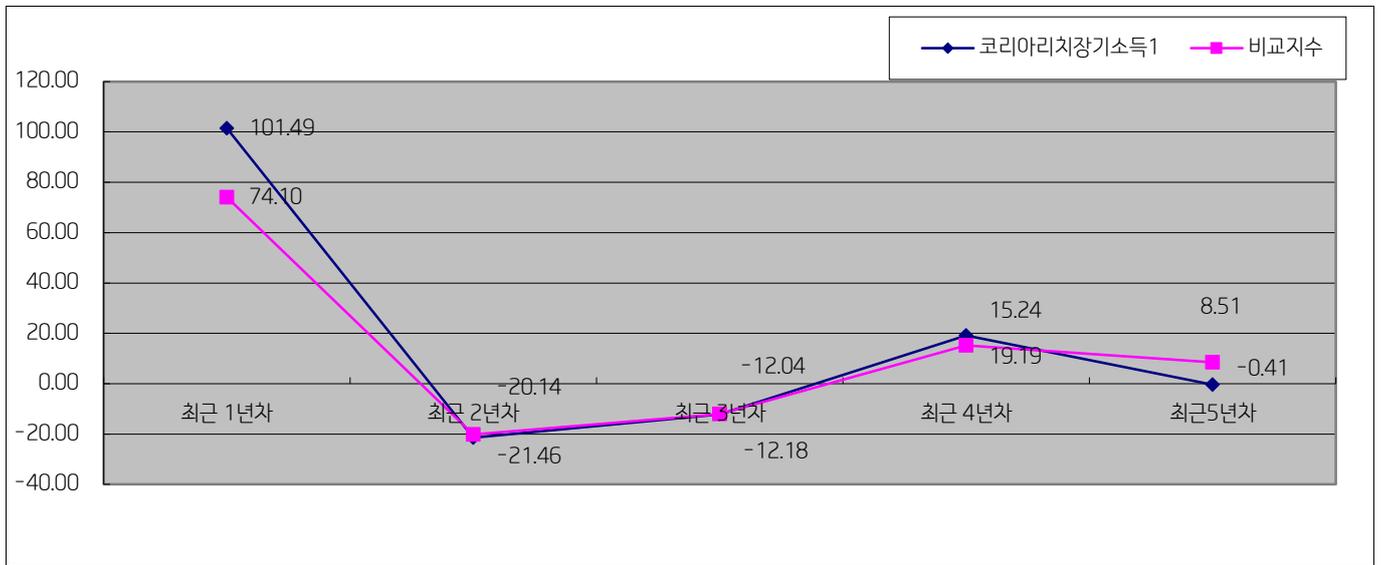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03.17 ~ 21.03.16	19.03.17 ~ 20.03.16	18.03.17 ~ 19.03.16	17.03.17 ~ 18.03.16	16.03.17 ~ 17.03.16
운용	101.49	-21.46	-12.18	19.19	-0.41
비교지수	74.10	-20.14	-12.04	15.24	8.5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소득공제(C)	99.44	-22.37	-13.14	17.91	-1.51
비교지수	74.10	-20.14	-12.04	15.24	8.5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소득공제(Ce)	100.16	-22.05	-12.81	18.36	-1.13
비교지수	74.10	-20.14	-12.04	15.24	8.5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소득공제(S-T)	100.18	-22.04	-12.80	18.37	-1.12
비교지수	74.10	-20.14	-12.04	15.24	8.51



주 1) 참고지수 = KOSPI * 95% + CALL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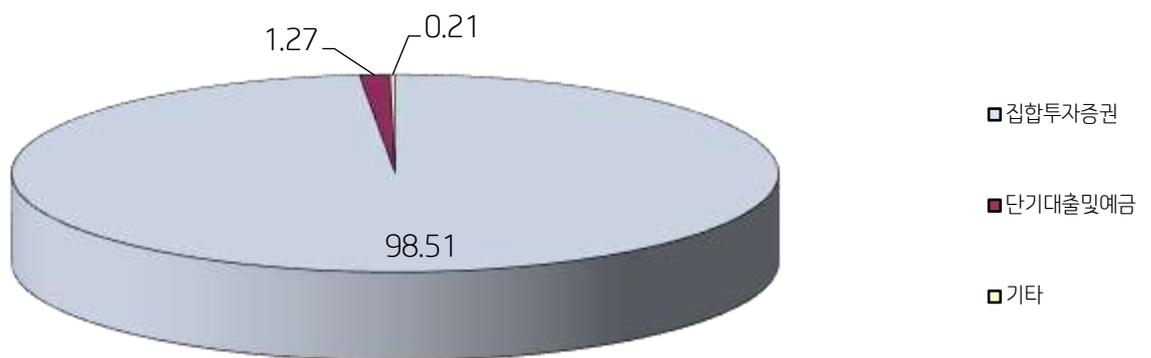
주 2)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단위: 억원, % / 2021.03.1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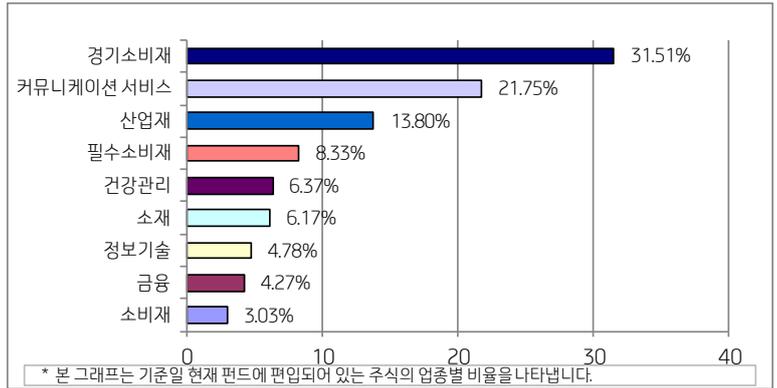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00	0.00	0.00	113.60	0.00	0.00	0.00	0.00	0.00	1.47	0.25	115.32
	(0.00)	(0.00)	(0.00)	(98.51)	(0.00)	(0.00)	(0.00)	(0.00)	(0.00)	(1.27)	(0.21)	(100.00)
합계	0.00	0.00	0.00	113.60	0.00	0.00	0.00	0.00	0.00	1.47	0.25	115.32
	(0.00)	(0.00)	(0.00)	(98.51)	(0.00)	(0.00)	(0.00)	(0.00)	(0.00)	(1.27)	(0.21)	(100.00)



[국내 주식 업종별 투자비중] 에셋플러스 코리아 리치투게더 증권 장기소득공제 자투자신탁 1 호[주식]

(단위: 백만원, %)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1	경기소비재	3,344	31.51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2,308	21.75
3	산업재	1,464	13.80
4	필수소비재	884	8.33
5	건강관리	676	6.37
6	소재	655	6.17
7	정보기술	507	4.78
8	금융	453	4.27
9	소비재	322	3.03
	합 계	10,613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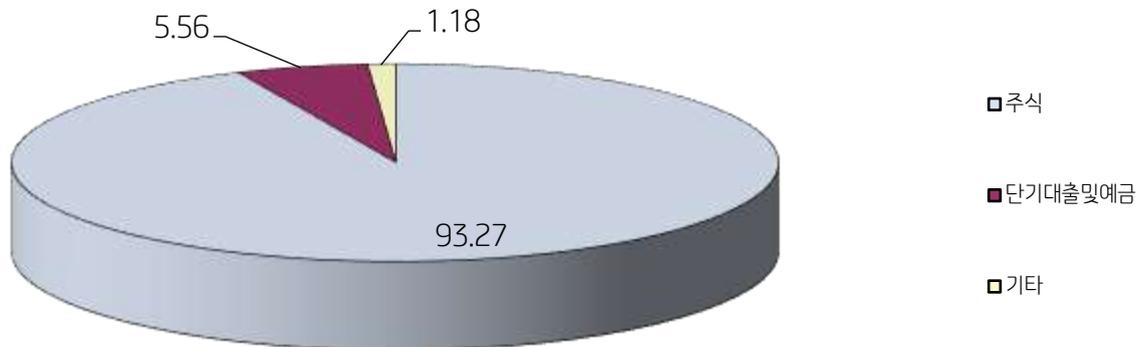
주) 보유비율=평가액/총평가액*100

주) 업종기준은 GICS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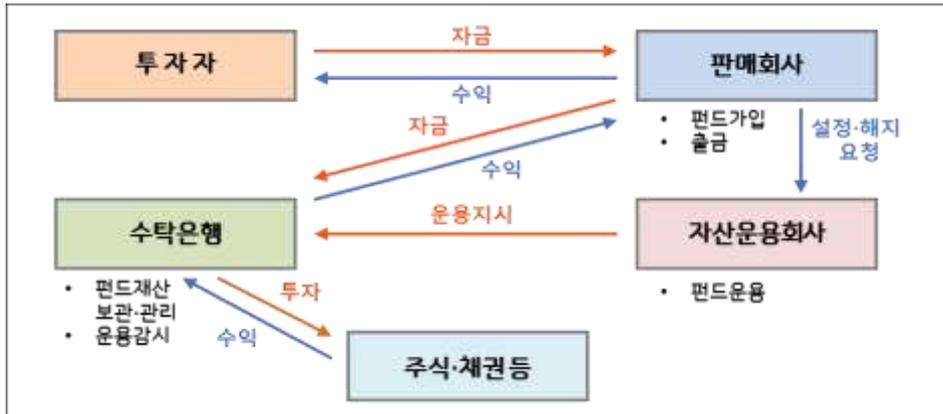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에셋플러스 코리아 리치투게더 증권 모두자신탁[주식]

(단위: 억원, % / 2021.03.16. 기준)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2,187.8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30.33	27.63	2,345.84
	(93.2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56)	(1.18)	(100.00)
합계	2,187.8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30.33	27.63	2,345.84
	(93.2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56)	(1.18)	(100.00)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 번길 14 리치투게더센터 / 전화번호: 연락처: 1544-7878 (www.assetplus.co.kr)
회사 연혁	1999.02. 이강금융컨설팅투자회사 설립 1999.07.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 등록 에셋플러스투자자문투자회사로 상호 변경 2006.09. 국민연금 우수운용사 선정 - 보건복지부 장관상(2 회 연속)(국민연금관리공단) 2008.06. 자산운용업 본허가 취득 및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로 상호 변경 에셋플러스 리치투게더 펀드 출시 2009.12. * 2009 펀드대상 루키상(머니투데이-모닝스타) - 코리아리치투게더펀드 2010.02. 2009 한국펀드대상 국내투자 라이징스타(매일경제) 2011.12. 2011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투자자보호 최우수상, 글로벌 주식부문 우수상(이데일리-KG 제로인) 2011.07. 제 1 회 이해하기 쉬운 자산운용보고서 평가 우수상(한국투자자보호재단) 2012.11. 에셋플러스 해피드림투게더 펀드 출시 2013.02. 제 12 회 한국펀드대상 액티브주식형(중소형사) 우수운용사(매경-에프앤가이드) 2013.03. 2013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투자자보호 최우수상(KG 제로인) 2014.03. * 2014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공모펀드부문 중국주식 최우수상(KG 제로인) - 차이나리치투게더펀드 2014.12. 2014 대한민국펀드대상 베스트자산운용사(머니투데이) 2015.02. * 2015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공모펀드부문 일반주식 최우수상(KG 제로인) - 코리아리치투게더펀드 2015.02. 제 14 회 한국펀드대상 액티브주식형(대형사) 우수운용사(매경-에프앤가이드) 2015.03. 제 6 회 아시아펀드대상 '베스트운용사'(아시아경제) 2015.05. 아시아인베스터 에셋 매니지먼트 어워즈 '올해의 운용사'(아시아인베스터) 2015.09. 아시아인베스터 코리아 어워즈 올해의 자산운용사, 최우수 국내주식형 중소형 운용사, 최우수 해외주식형 운용사(2 회 연속)(아시아인베스터) 2015.12. 2015 대한민국 펀드대상 '베스트펀드 해외주식형'(머니투데이)-글로벌리치투게더 증권펀드 2016.01. 2016 대한민국 펀드대상 '베스트 운용사(주식형)'(한국경제) 2016. 매경 증권대상 '베스트 운용사(주식형)'(한국경제) 2016.02. * 2016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글로벌주식 부문 최우수상'(KG 제로인) - 글로벌리치투게더 증권펀드 2017.07. 에셋플러스 알파로보펀드 출시 2018.01. * 2018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해외주식부문 최우수상(KG 제로인) - 글로벌리치투게더 증권펀드 2018.02. * 2018 모닝스타어워즈 중국주식형 부문 우수상 - 차이나리치투게더펀드 2018.09. * 2018 한경 핀테크 대상 자산운용부문 최우수상(한국경제) - 알파로보펀드 2019.03. * 2019 모닝스타어워즈 중국주식형 연금부문 우수상 - 차이나리치투게더연금펀드 2019.04. 에셋플러스 슈퍼아시아리치투게더펀드 출시 2020.02. 에셋플러스 굿밸런스펀드 출시 2020.05. * 2020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 '주식형 연금펀드 부문 최우수상'(매일경제) - 글로벌리치투게더펀드

	2020.11. *2020 대한민국 증권대상 공로상(서울경제) 2021.02. * 2021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중국주식 부문 최우수상'(KG 제로인) - 차이나리치투게더펀드 2021.02. * 2021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최우수상'(KG 제로인)
자본금	111.9 억원 (자기자본 385.8 억원) (2020.12.31. 기준)
주요주주	강방천(39.33%), 이태룡(15.08%) (2021.02.17. 기준)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억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20.12.31.	2019.12.31.	계정과목	2020.01.01 ~2020.12.31	2019.01.01 ~2019.12.31
유동자산	242	123	영업수익	218	120
비유동자산	401	455	영업비용	223	112
자산총계	643	578	영업이익	-4	7
유동부채	251	189	영업외수익	12	6
비유동부채	6	5	영업외비용	3	3
부채총계	258	195	세전순이익	5	10
자본금	112	112	법인세비용	0.5	2
이익잉여금	343	338			
자본총계	385	383	당기순이익	4	8

라. 운용자산 규모(설정원본)

(단위: 억원)

구분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투자일임	총계
	주식	혼합	채권	파생					
수탁고	10,740	446	-	1,103	-	-	620	1,906	14,815

주) 2021.03.16. 기준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 전화번호: (02) 3702-3114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tandardchartered.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1) 의무

- 신탁업자가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2)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6,22 층 / 전화번호: (02) 2180-04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NICE P&I	KIS 채권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전화번호: (02) 2251-1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 길 19 (여의도동) 전화번호: (02) 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 길 38 전화번호: (02) 3215-1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nicepni.co.kr	www.bond.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2)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3)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 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본시장법 제 190 조제 5 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 229 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 나.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5) 투자신탁의 합병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2)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 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상품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 설정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이후에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가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을 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에 포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 유통권 판매회사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투자신탁 수익자의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 수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2) 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에 이 투자신탁의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내용을 자투자신탁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 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www.assetplus.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역
중개회사 선정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 (매매체결업무 수수료 및 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 - 거래 유형에 따른 중개회사별 매매체결 능력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 세미나, 리서치 자료 등 서비스 제공 능력 및 유용성
중개회사 선정시 금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는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됨. -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우대하여서는 아니됨.
매매배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회사 선정 및 조사분석 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함. - 대량매매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에는 예외적용 가능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의결합니다.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익증권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자산운용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자산운용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